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안

(최민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61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 최민규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규남, 김동욱,
김영철,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 석, 박춘선,
서상열,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유정인, 이봉준,
이상욱, 이성배, 이원형,
이종환, 장태용, 정지웅,
최유희,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31명)

1. 제안이유

- 학교가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시행하는 늘봄학교 운영 중 참여 학생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이를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늘봄학교 참여 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돕고, 늘봄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이와 함께 현행처럼 법령이나 조례 등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늘봄학교 간식비 지원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만큼, 늘봄학교 사업이 이러한 우려와 문제를 해소하여 운영되도록 자치법규상 그 추진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늘봄학교 간식 지원에 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이 조례의 적용 범위에 대해 정함(안 제4조).

- 라. 교육감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간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다룸(안 제5조).
- 마. 늘봄학교 참여 학생에게 제공되는 간식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바. 늘봄학교 참여 학생에게 제공되는 간식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학교에서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시행되는 간식 제공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 높은 학교 교육·돌봄 구현 및 보호자 부담 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늘봄학교”란 학교가 정규 수업시간 이외에 학생의 성장과 발달, 돌봄 공백 해소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간식”이라 함은 학생에게 제공되는 가공 없이 바로 급식이 가능한 식품과 반(半)조리 식품을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학교”란 제4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학생”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생활 개선과 내실있는 늘봄학교 운영 등을 도모하기 위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간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늘봄학교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간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 같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에 적용한다.

제5조(간식 제공과 지원) ① 학교장은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간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늘봄학교에서의 간식 제공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간식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과 방식, 횟수 등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간식의 관리·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에 늘봄학교 간식 제공을 위해 필요한 조리기구나 식품 보관을 위한 장비 등이 갖춰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장과 그 학교의 늘봄학교 간식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이하 “관계 교직원”이라 한다)은 늘봄학교 참여 학생에게 간식을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늘봄학교 참여 학생에게 제공되는 간식은 학생의 선호와 영양적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늘봄학교에서 간식이 제공되기 전에 늘봄학교 참여 학생의 식품 알레르기 등의 질환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늘봄학교 참여 학생에게 제공되는 간식에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된 식재료가 식품 또는 원재료에 포함되지 않도록 검수(檢受)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가.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식재료

나.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식재료

제7조(안전한 간식 제공을 위한 준수사항) ① 학교장과 관계 교직원

은 늘봄학교 참여 학생에게 제공되는 간식의 구매와 보관, 조리, 배식 등 간식 지원 전 과정에 있어 위생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과 관계 교직원은 늘봄학교에서 제공되는 간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이 사실을 미리 늘봄학교 참여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교육감은 늘봄학교의 안전한 간식 제공을 위하여 학교장과 관계 교직원이 지켜야 할 기준 또는 지침 등을 수립하여 보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돌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돌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안은 안 제5조(간식 제공과 지원) 및 제6조(간식의 관리·운영)에 따른 돌봄학생 대상 간식비 및 조리기구, 식품 보관을 위한 장비 비용이 발생하지만 서울시교육청 관련부서(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 예산문서 등을 확인결과 기시행사업¹⁾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김 진 형

☎ 02-2180-7954

e-mail : kjh0816@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2025년 서울시교육청 <돌봄학교 운영>

사업내역	예산	
	산출기초	금액
돌봄교실간식비	2,500원×49,800명×20일×12월×85%	= 25,398,000천원

자료 : 2025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